

2023년도 제2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경력경쟁채용시험 재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 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3년 3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선발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0명)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
B	약무주사보(7급)	10명	국가공무원법상 정년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처(본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 주요 업무 분야

※ 담당예정업무는 대표적인 업무이며, 담당예정업무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제 시행규칙상 임용된 부서에 분장된 관련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B	약무주사보(7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품 및 마약류의 재평가 및 재심사에 관한 사항 등 ○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등 품목(변경) 허가 및 (변경)신고 등

※ 각 지방식약청의 근무지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내 지방식약청 소개 참고

3. 응시자격요건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3.4.4.(화)] 기준 판단

가. 공통요건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20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2003.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직급별 응시자격요건 : [우대요건 등 상세내용은 \[붙임\]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참고](#)

직급	응시자격요건
약무주사보 (7급)	○ [자격증] 대한민국 약사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

다. 응시 관련 유의사항

<공 통> * **우대요건 등 상세내용은 [붙임]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참고**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응시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3.4.4.) 기준으로 판단함**
 ※ 최종(면접)시험일까지 해당 요건 충족 여부를 증명하지 못하면 부적격 처리됨
- **우대요건,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23.3.17.)으로 충족한 경우 인정**

<응시자격요건 - 자격증>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자격증 사본 제출 시 주의사항 :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받은 자격증은 자격증 번호가 갱신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신 자격증 사본을 제출
-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예: 운전면허증,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등)은 심사대상이 아니므로 제출하지 말아야 함**

<우대요건-경력>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재직)증명서(근무기간, 휴직기간, 직위(직급), 주 근무시간 명시 및 세부적인 담당업무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연차별 차등배점)
 ※ 경력기간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시간제 근무경력인 경우에는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 인정**
 ※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 휴직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 명확할 경우 미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별도 첨부(기관 직인 또는 관리자 서명 등 반드시 포함)
 ※ 경력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 학위 취득을 위한 조교 근무(연구) 경력은 불인정
- 서류 미제출 또는 **세부 경력 사항 미기재 등의 사유로 해당 경력이 응시 관련분야와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서류전형 시 해당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
 - ①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제출
 - ②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제출
 - ③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텍스) 제출
 - ④ 폐업사실 증명서(국세청 홈텍스) 제출
 ※ 서류 확인 과정에서 폐업되지 않은 기관(기업·단체)의 경력에 대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될 시 해당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서류 미제출 또는 세부경력사항 미기재 등의 사유로 해당 경력이 응시관련분야와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서류전형 시 해당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우대요건 - 학위>

- '학위의 관련분야는 전공분야 또는 학위논문을 기준으로 하며 학위별 차등 우대

<우대요건 - 어학>

- '외국어(영어) 성적' 및 '국어능력시험 성적'의 경우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성적에 따라 차등배점 ※ '21년 4월 1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의 성적이어야 유효함
-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시험점수에 대해 인정되며, 인정되는 외국어(영어) 및 국어능력 시험성적을 시험별로 소지한 경우에는 각각의 성적을 모두 제출

<가산점> * 가산점 관련 상세내용은 하단 '8. 가산점 적용' 참고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소지 시 차등 우대
 -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3급 이상을 획득한 경우
- 취업보호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 : 응시자 중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만점의 일정 비율(10%/5%/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4.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5.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 자격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 서류전형기준 : 발전가능성(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의 충실성),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근무경력, 학위, 어학성적 등 우대요건 및 가산점[자세한 사항은 직무기술서 참고]

-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전 인성검사 실시(온라인)
 - 목적 : 공직가치관 및 위기대응능력 사전 검증
 - 검사 결과는 면접위원회에 제공되어 면접시험 시 참고자료로 활용됨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개인발표(5분 스피치)* 이후 면접위원과 서류전형 합격자간 질의·응답을 통한 종합 평가(30분 이내)

* 개인발표(5분 스피치) 과제 작성·검토는 응시순서에 따라 면접장 이동 전 별도장소에서 진행(20분)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① 공무원으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불합격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의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 중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 불합격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 실시(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 제3항)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시험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 방법 등

가. 원서접수 : 2023. 3. 9.(목) 10:00 ~ 3. 17.(금) 16:00 (공고 : '23. 3. 7. ~ 3. 17.)

-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https://employ.mfds.go.kr>)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응시수수료(7,000원)외 소정의 처리비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관련 부가 비용 등) 발생
- 제공된 서식 이외의 증빙자료는 스캔 후 파일로 첨부(업로드)하여야 함

✓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동일인이 복수 또는 중복 지원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 원서접수 완료되면 자동으로 응시번호 생성됨
- 응시수수료 결제 전 단계까지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는 있으나, 응시수수료 결제 이후 및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
-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 취소 시 응시수수료는 환불 처리함
- 자료 작성 후 원서수수료 결제까지 완료한 시점이 원서가 접수된 시점이므로 원서접수 마감시간 내에 '결제'까지 완료하지 않으면 접수 처리되지 않음
- 주말에는 전화 문의가 불가능하고, 접수 마감일에는 응시자가 몰릴 경우 서버가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3. 16.(목)까지 결제를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예정) : 2023. 3. 24.(금)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인사혁신처)에 공지 예정

다. 면접시험(예정) : 2023. 4. 4.(화)

* 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라.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2023. 4. 13.(목)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인사혁신처)에 공지 예정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하며,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예방을 위하여 변경·연기될 수 있음

※ 임용 시기는 '23년 5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7. 제출서류 안내[모든 서류는 사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가. 공통사항

-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별지서식 제1호>
 - *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목록(시스템 활용 제출서류는 제외)
- ② 응시원서 : 원서접수 시스템에서 원서접수를 완료하면 자동 생성
 - * 응시 수수료 전자결제(7,000원) 외 소정의 처리비용 발생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단, 응시수수료를 먼저 결제하고 추후 관계기관 조회 또는 증명서 제출을 통하여 반환)
- ③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 중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작성
- ④ 자기소개서(A4 1매 작성) 1부 <별지서식 제3호>
 - * 직무수행능력 및 본인의 강점·장점, 임용예정직위와의 직무적합성 등 A4용지 1매로 기술하며, 학교명, 출생지 등 불필요한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 ⑤ 직무수행계획서(A4 3매 작성) 1부 <별지서식 제4호>
 - * 임용예정 직위의 담당직무에 대해 직무수행 및 추진계획, 비전, 추진전략 및 추진방법 등 기술
- ⑥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 * 제출자료 진위 검증 및 제3자 정보 제공 동의,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 ⑦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성만 제출
 - *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제출(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

⑧ 자격요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 가능한 관련 자격(면허)증 제출, 분실 시 면허자격증명서는 제출 가능(단, 합격확인서는 불가)

⑨ **우대요건 관련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 경력증명서는 재직기간, 휴직기간, 직위(급), 담당업무(구체적으로 기재, 미기재시 경력 불 인정), 주당 근무시간 표시(예: 주00시간),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FAX번호)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 비상근경력(시간제 경력)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주00시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내용 미비,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련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를 별도 첨부(기관 직인 또는 관리자 서명 등 반드시 포함)

⑩ **4대 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

* '경력'을 우대요건으로 제출한 자에 한함

- *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 제출
- * 소득금액증명원은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 모두 나오도록 발급

⑪ **학위증명서[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 *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우대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공개되지 않음
- *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1부,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 (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별지서식 제6호>
- * (국외학위 취득자) 학위증 및 졸업증명서 사본(2개 모두) 제출(한글번역본 첨부)
- * 해외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학위 사본 제출 후 면접일 지참가능)
- *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학위수여(졸업)예정증명서 제출도 가능하나, 최종시험(면접)일 현재 해당 학위를 소지하여야 함

⑫ **학위 성적증명서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 전공의 업무 관련성 확인용으로 우대요건으로 ⑪ 학위증명서 제출한 경우 모두 제출
- * 성적증명서 내 학점(점수) 등은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가능

⑬ **외국어(영어)능력 성적 1부**

* 해당자에 한함

- * 인정시험: TOEFL(iBT), TOEFL(PBT), TOEIC, New TEPS, FLEX, G-TELP(Level2)
- * 2021. 4. 11. 이후 실시된 시험 성적에 한함

⑭ 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 인정시험: 한국어능력시험(KBS), 한국실용글쓰기검정(KLATA)
- * 2021. 4. 11. 이후 실시된 시험 성적에 한함, 성적증명서에는 반드시 점수가 기재되어야 하며, 등급만 기재된 성적증명서는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⑮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 국사편찬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 시험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인증서 사본

※ **국외에서 발급된 증빙자료(학위, 논문, 경력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 국외 학위 및 근무(연구)경력의 경우 담당교수 등 학위취득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화번호, FAX, 이메일 주소 등을 반드시 명시**

8. 가산점 적용

○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 만점의 10% 또는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산점은 각각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의사상자 등 가산점이 중복되는 경우 1개만 적용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서류전형 만점의 5% 또는 3%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등급 이상 : 5점 3등급 : 3점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관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서류전형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은 응시자 중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만점의 일정비율(10%/5%/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처 상담센터 ☎ 1577-0606)으로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산점비율은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5)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3년 5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적용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10. 기타 유의사항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어로 발행된 증빙서류는 한글번역본도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요건의 판단 및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같은 규정에 의한 시험, 그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며,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에 다른 공무원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3. 4. 13. ~ '23. 4. 20.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변경된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에 따른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시험시행결과 채용계획에 합당한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통지 이후라 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및 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 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면접시험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4항)
-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 법령과 규정을 따릅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지원과 인사관리팀 (☎ 043-719-1246)

붙임 1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 [약무주사보 / B]

직위코드	임용예정기관명	임용예정직급(직류)	선발예정인원
B	식품의약품안전처(본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약무주사보(약무)	10명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품 관련 정책 및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등 ○ 의약품·마약류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평가 등 ○ 의약품 및 마약류의 재평가 및 재심사에 관한 사항 등 ○ 약사감시 계획 수립·조정 등 ○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등 품목(변경) 허가 및 (변경)신고 등 ○ 의약품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평가, 일반·특별감시, 수거·회수 등
-------	--

필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역량) 공직윤리(공정성·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긍정성, 문제해결력·관계구축력, 의사소통능력 ○ (직렬별 역량) 전문성, 계획관리능력, 집행관리능력
-------	---

필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품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및 기준·규격에 관한 지식 ○ 의약품 제조·유통 관련 지식
-------	---

응시자격요건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						
	관련분야 : 의약품 등 안전관리						
자격증	○ 대한민국 약사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						
우대요건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관련분야 근무경력(연차별 차등 배점)						
	○ 약학 관련 석사 이상 학위(학위별 차등 배점)						
	○ 외국어(영어)성적이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인 자						
	* TOEFL(iBT, PBT), TOEIC, New TEPS, FLEX(영어), G-TELP(Level2) 소지자						
	구분	TOEFL(iBT)	TOEFL(PBT)	TOEIC	New TEPS	FLEX	G-TELP(Level2)
	기준 점수	86점이상	567점이상	790점이상	385점이상	700점이상	77점이상
	○ 국어능력시험 성적이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인 자						
	구분	한국어능력시험(KBS)		한국실용글쓰기검정(KLATA)			
	기준점수	570점 이상		550점 이상			
	▶ 외국어(영어) 및 국어능력 우수자는 위의 해당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성적에 따라 차등 배점(21년 4월 1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의 성적이어야 유효)						
	▶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시험점수에 대해 인정, 인정되는 외국어(영어) 및 국어능력시험성적을 시험별로 소지한 경우에는 각각의 성적을 모두 제출						
가산요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일정 등급을 취득한 자 (2등급 이상 : 서류전형 만점의 5% / 3등급 : 서류전형 만점의 3%)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 서류전형 만점의 10% 또는 5%						
	○ 의사상자 등(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 서류전형 만점의 5% 또는 3%						

<별지서식 제1호>

제출서류 총괄표

직위코드	응시직급	응시자격요건	성명	생일
B	약무주사보	자격증	김 O O	0000.00.00

■ 제출서류목록(총괄표)

번호	제출서류명	필수여부	제출여부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필수	<input type="checkbox"/>
2	이력서	필수	<input type="checkbox"/>
3	자기소개서	필수	<input type="checkbox"/>
4	직무수행계획서	필수	<input type="checkbox"/>
5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본인 서명 필수	필수	<input type="checkbox"/>
6	주민등록초본 사본 (남자의 경우에만 제출-병역사항 기재된 것)	남성 필수	<input type="checkbox"/>
7	응시자격요건 관련 자격(면허)증 사본	필수	<input type="checkbox"/>
8	우대요건 관련 경력증명서, 4대보험 중 1개의 자격 득실 이력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원 사본 각 1부	해당자	<input type="checkbox"/>
9	학위증명서(대학교 이상), 성적증명서 사본	해당자	<input type="checkbox"/>
10	석·박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 논문 요약서	해당자	<input type="checkbox"/>
11	우대요건 관련 외국어(영어) 성적증명서	해당자	<input type="checkbox"/>
12	우대요건 관련 국어능력시험성적증명서	해당자	<input type="checkbox"/>
13	가산요건 관련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해당자	<input type="checkbox"/>
14	가산요건 관련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류	해당자	<input type="checkbox"/>

※ □에는 서류제출여부를 √하고, 응시자격요건은 반드시 1개를 선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월 일

작성자(응시자) 성명

(서명)

<별지서식 제2호> 이 력 서

※ 응시분야(약무주사보)

이력서

가. 인적 사항

응시 번호	(공란으로 제출)	응시 분야	B	응시 자격요건	자격증	성 명	김 O O
----------	-----------	----------	---	------------	-----	-----	-------

나. 응시 자격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은 삭제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는 '다'의 우대요건에 작성

자 격 증	자격증명	취득(예정)일	자격증 번호	자격 검정기관
	약사	0000.00.00		

다. 우대 요건 ※ 응시자격요건으로 작성한 것 이외의 사항을 작성 후 공란은 삭제

* 경력은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근무경력 중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만 기재

경 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주당 근무시간	직위	담당업무(요약)
	대한약품(주)	16.00.00~17.00.00(00월00일)	40시간	과장	증빙자료에 기재된 내용만 작성
	대한연구소	17.00.00~18.00.00(00월00일)	20시간	연구원	

학 위	전공(세부)	학위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약학	0000.00.00	학사
	약학	0000.00.00	석사

영 어 성 적	응시일자	시험명	점수	유효기간	영문성명
	0000.00.00	TOEIC	800	0000.00.00	

국 어 능 력	응시일자	시험명	점수	유효기간	자격(수험) 번호
	0000.00.00	한국실용글쓰기검정	600	0000.00.00	

라. 가산요건 ※ 해당사항 없을 시 공란 삭제

한국사	시험일자	회차	등급	인증번호
	0000.00.00	00	3	00-000000

취업지원 대상자	보훈번호	가점비율

* 기재사항이 많더라도 반드시 1장으로 작성(줄 추가·삭제, 글자크기 조절 등 가능)

이력서 작성요령

※ 3p 응시 관련 유의사항 숙지 후 작성 바랍니다.

□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 인적사항

-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공란으로 제출, 담당자 확인 후 기재예정)
- ②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예정 직급의 직위코드 기재(예: B)

나. 응시자격 : 자격(면허)의 소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3.4.4.) 기준으로 판단하며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만 기재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취득(예정)일·면허증 번호·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 분실 시 면허자격증명서는 제출 가능 (단, 합격확인서는 불인정)

다. 우대요건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2023.3.17.)]

【경력】 응시자격요건 충족이후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예)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약사)을 2021. 3. 2.에 취득한 사람이 2021.1.1.부터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경우, 응시자격요건이 충족된 2021. 3. 2. 이후 근무경력만을 ‘다. 우대요건’ 경력란에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반드시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증빙으로 제출하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휴직기간, 직위, 담당업무)
-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의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별도 첨부(기관 직인 또는 관리자 서명 등 반드시 포함)
- * 경력증명서 상 담당업무 미기재, 서류 미제출 또는 세부경력사항 미기재 등의 사유로 해당 경력이 응시분야와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경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2023.3.17.)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 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과거 근무경력 중 당시 소속기관(기업·단체 등)의 폐쇄(폐업 등)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①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담당업무가 포함된 서류) ②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③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④ 폐업사실증명서 ①~④ 모두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음

- * 서류 확인 과정에서 폐업되지 않은 기관의 경력에 대해 경력증명서 없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원’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담당업무 등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 인정되므로 증명서에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 표시되어야 함**

【학위】 직무기술서상 직무 관련 학위만 기재

- 학위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학위종류·취득(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석·박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1부 제출(별지서식 제6호)

【영어성적 및 국어능력】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 인정 가능한 영어성적은 ‘TOEFL(iBT), TOEFL(PBT), TOEIC, New TEPS, FLEX, G-TELP’, 국어성적은 ‘한국실용글쓰기검정, 한국어능력시험’
- * 영어성적 및 국어성적은 **2021.4.11. 이후에 실시된 시험의 성적에 한함**. 발표된 시험 성적 중 직무기술서 내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응시자가 획득한 성적에 따라 차등 평정됨
- *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시험점수를 인정하므로, 인정되는 영어성적 및 국어능력시험 성적을 시험별로 소지한 경우에는 각각의 성적을 모두 제출 가능

라. 가산요건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한국사능력검정시험성적】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시험이어야 유효함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상의 보훈번호 및 가점비율 기재

<별지서식 제3호>

자기소개서

응시직급	(예시) 약무주사보	응시자격 요건	(예시) 자격증	성명	

<작성요령 - 이하 부분은 확인 후 삭제하고 작성할 것>

-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 전망, 성품, 직장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태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출신학교명, 출생지, 부모 등 친인척의 인적사항 등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서류심사 과정에서 불이익(불합격처리, 감점 등)을 받을 수 있음
- 글자크기 10pt 이상, A4용지 1매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

<별지서식 제4호>

직무수행계획서

응시직급	(예시) 약무주사보	응시자격 요건	(예시) 자격증	성명	

<작성요령 - 이하 부분은 확인 후 삭제하고 작성할 것>

- 특별한 양식 없이 자신의 경험, 기관 및 임용예정직급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비전 및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및 일정, 방법 등을 포함하여 기술
- 출신학교명, 출생지, 부모 등 친인척의 인적사항 등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서류심사 과정에서 불이익(불합격처리, 감점 등)을 받을 수 있음
- 글자크기 10pt 이상, A4용지 3매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

<별지서식 제5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증·학위 등 조회에 관한 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경력·논문·연구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제34조 제5항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법무부 국적과	공무원 채용 관리	<u>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u>	<u>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u>
<u>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u>	공무원 채용 관리	<u>자격증, 경력사항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u>	<u>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u>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4. 시험 부정행위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인사혁신처

(2) 제공목적 :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3) 제공하는 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처분 있는 날로부터 5년 (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채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3. . .

성명 : (서명)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별지서식 제6호>

학위 논문 요약서(석사·박사)									
직위 코드		응시 직급	약무주사보	응시자격 요건	자격증	성명		생년 월일	91.11.11

학과	전공(세부)	학위종류	학위번호	학위취득일	지도교수
		○○석사			
		○○박사			

* 논문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 제출(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석사학위	논문제목 (한글명) (영문명)
논문심사일	0000. 00. 00.
내용 (간단히 요약)	* 연구목적, 연구내용, 연구결과의 활용도 등 기재
박사학위	논문제목 (한글명) (영문명)
논문심사일	0000. 00. 00.
내용 (간단히 요약)	* 연구목적, 연구내용, 연구결과의 활용도 등 기재